



1 교통유발부담금

▶ 개념

-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

▶ 관련근거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(제36조~제41조), 시행령(제16조~제29조)
-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

▶ 사업개요

- 부과대상: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,000㎡ 이상인 시설물 (주거용 제외)
- 부과기간: 매년 전년도 8월1일 ~ 당해년도 7월31일
- 부과기준: 매년 7월31일
- 부과방법: 후납제, 연1회 (부과기준일 매년 7월31일)
- 납부기한: 매년 10월 16일 ~ 10월31일
- 산정기준: 시설물연면적 × 단위부담금(1㎡당) × 교통유발계수
- 시설물연면적: 총별 바닥면적의 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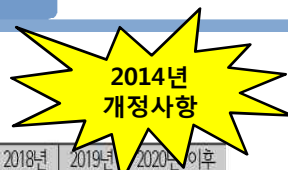


1 교통유발부담금

● 단위부담금이란?

- 단위부담금(1㎡당)

| 부과기준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이후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3천㎡ 이하 | 700원 | 700원 | 700원 | 700원 | 700원 | 700원 | 700원 |
| 3천㎡ 초과~3만㎡ 이하 | 700원 | 800원 | 900원 | 1,000원 | 1,100원 | 1,200원 | 1,400원 |
| 3만㎡ 초과 | 800원 | 1,000원 | 1,200원 | 1,400원 | 1,600원 | 1,800원 | 2,000원 |



※ 단, 3천㎡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/100으로 함



▶ 재원 사용처

- 대중교통 개선사업,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, 주차장 건설 및 주차난 해소사업 등 교통개선사업의 재원



2 | 교통수요관리



2 | 교통수요관리

▶ 개념

- 승용차 이용억제,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하여,
-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,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

▶ 관련근거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
-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

▶ 사업개요

- 참여대상 :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(각 층 바닥면적의 합 1,000㎡이상인 시설물)
- 참여혜택 : 감축프로그램별 부담금 0 ~ 30% 경감(참여정도,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)
 - 총 경감률 : $[1 - (1-a) \times (1-b) \times (1-c)] \times 100\%$ (※ a, b, 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률)
-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: 10개 프로그램 운영

- 승용차 부제(요일제, 5부제, 2부제), 주차장 유료화, 주차장 축소, 주차유도시스템, 자전거 이용, 유연근무제, 통근버스 운영, 셔틀버스 운영, 업무택시, 기타(나눔카)



1-1. 승용차 부제운영 (요일제)

| | |
|------|--|
| 정 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승용차 요일제 전자스티커(RFID)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 시설물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 |
| 참여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사자, 이용자 |
| 경감비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20% 범위 내</u> |
| 이행기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요일제 전자스티커(RFID)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(단, 주차면수의 <u>4%이내 차량 미이행시 인정</u>) 점검횟수 : 연면적 <u>3천㎡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 / 3천㎡ 미만(반기별 1회 이상)</u> |
| 운영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승용차 요일제 운영 알림 입간판 설치 승용차 요일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 배치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(주차장 등)에서 승용차 요일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 ※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: 긴급자동차, 장애인차량,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 |

서대문구

2 | 교통수요관리 - 참여방법

1. 수요관리 참여접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(기업체 → 관할구청)

- 접수기간 : 당해년도 7월 31일 (익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가능)
 - ※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최소 이행기간 : 참여기간 중 **3개월 이상** 연속하여 이행
- 접수방법 : 서면접수와 인터넷 접수
 - ① 서면접수 : 시설물 소재 구청(교통행정과)
 - ② 인터넷 접수 : <https://s-tdms.seoul.go.kr/>
- 접수서류 :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

경감비율 • 20% 범위 내

점검횟수 : 연면적 3천㎡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
3천㎡ 미만(반기별 1회 이상)

2 | 교통수요관리 - 참여방법

2. 수요관리 이행점검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점검 (관할구청 → 기업체)

- 점검기간: 당해년도 8월 1일 ~ 이듬해 7월 31일
- 점검방법: 현장점검(현장단말기 사용) 및 서면점검
 - ① 현장점검: 자치구 단독점검, 또는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점검
 - ② 서면점검: 기업체(시설물)에서 교통량 감축 이행관련 제출한 서류 확인
 - ※ 기업체(시설물):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관련 서류 제출
- 점검횟수: 분기별 1회 이상 (점검기간 통보 후 불시점검)
 - 근거: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



2 | 교통수요관리 - 참여방법

3. 수요관리 감면신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(기업체 → 관할구청)

- 신청기간: 이듬해(부과년도) 8월 10일까지
- 접수방법: 서면접수와 인터넷 접수
 - ① 서면접수: 시설물 소재 구청(교통행정과)
- 신청서류: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

4. 수요관리 감면결정 교통량 감축 이행결과에 따른 경감 (관할구청)

-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
- 결정기간: 이듬해 9월 1일 ~ 9월 30일
- 경감방법: 서울시조례 의거 이행결과에 따라 경감

5. 수요관리 감면통보 경감결과 통보 (관할구청 → 기업체)

- 경감통보: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
- 조정신청: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



3 금년도 변동사항

※ 참고 : 2014년도 주요 변동사항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700원인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,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, 부담금 산정방식도 면적별(3천 m²이하, 3천 m²초과~3만 m²이하, 3만 m²초과)로 차등 적용함
- 나. 교통혼잡 유발 과다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현행 9.83을 적용하고 있는 백화점, 대형쇼핑센터 등에 교통유발계수를 10.92(11% ↑)로 상향 조정함
- 다. 감축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주차장 유료화의 경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, 효과가 낮은 주차장 축소, 주차유도시스템, 업무택시제 등에 대한 경감률을 하향 조정함
- 라.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·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과면적 기준을 100제곱미터에서 180제곱미터로 상향

◇ 개정이유

2014년 1월 14일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



3 금년도 변동사항

| 현행 | 현행 프로그램 | 경감률 | 개정 | 개정안 프로그램 | 경감률 |
|----|--|-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<신설> | - | | <u>(나눔카 이용)</u> ◦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 ◦ 나눔카 이용금액의 50% | 10% |
| | (주차장 유료화) ◦ 무료주차 1시간 이내 ◦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기준 - 10%(≥100%), 15%(≥110%) 20%(≥120%), 30%(≥130%) | 30% | ➔ | (주차장 유료화) ◦ 무료주차시간 없음 ◦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기준 - 10%(≥80%), 20%(≥100%) 30%(≥130%) | 동일 |
| | (주차장 축소) ◦ 주차면수 축소비율에 따라 경감 (당해연도 포함 3년까지 경감) ◦ 주차면수 "0"인 경우, 20% 경감 | 20% | | (주차장 축소) ◦ 좌동 ◦ 주차상한제 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% 이상 감축 ◦ 주차면수 "0"인 경우 (단 3천m ² 이상 시설에 한함) | 동일 30% 50% |

서대문구


3 | 금년도 변동사항

| 현행 | 현행 프로그램 | 경감률 | 개정 | 개정안 프로그램 | 경감률 |
|----|---|-----|----|---|-----|
| | [주차유도시스템] ◦ 주차유도시스템 설치, 운영 (당해연도만 경감) | 10% | | [주차정보제공시스템] ◦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·운영 및 정보제공(당해연도만 경감) | 동일 |
| | [유연근무제] ◦ 대상 : 종사자 100인 이상 ◦ 종사자 30% 이상이 시차출근 참여(1시간 이상 차이), 스마트워크근무, 재택근무 실시 ◦ 1시간 차이라면 10%씩 경감 | 20% | ➔ | [유연근무제] ◦ 대상 : <u>종사자 50인 이상</u> ◦ 종사자 30% 이상이 시차출근 참여(1시간 이상 차이), 스마트워크근무, 재택근무 등 실시 ◦ 10%(종사자 30% 이상 참여) 15%(종사자 40% 이상 참여) 20%(종사자 50% 이상 참여) | 동일 |
| | [업무택시제] ◦ 실제 사용금액 경감 | 20% | | [업무택시제] ◦ 실제 사용금액의 50% | 동일 |

서대문구


3 | 금년도 변동사항

시행시기 : '16.8.1(예정)
2017년(내년) 부과분부터 적용



불확실

기타 : 승용차부제 프로그램(요일제)
관련 안내 사항



서울시 요일제 차량 '자동차세 5% 감면' 내년부터 폐지

기타 : 승용차부제 프로그램(요일제) 관련 안내 사항

주행거리 감축이라 인센티브 제공 승용차 미일리지제 시범사업

(서울=연합뉴스) 최윤경 기자 =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세 5% 감면 혜택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.

